



일반 구매 조건

2021년 5월

구매 운영 방향

일반 구매 조건

1. 적용과 해석

"쌍방"이 서명한 서면 "계약"에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국가별 조건과 예외를 포함한 본 일반 구매 조건("일반 조건")은 관련 "계약"에 명시된 미쉐린 법인 그룹 소속 "계열사"("구매자")가 상품과 "서비스", 관련 인도물, 그리고 5조에 정의된 작업결과물(이하 각각 칭하여 또한/또는 통칭하여 "제품" 및/또는 "서비스"라고 함)을 동 "계약"에 명시된 해당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판매자("공급자")로부터 구매할 때 항상 적용된다. 본 "일반 조건"은 "구매자"와 "공급자"(통칭하여 "쌍방")가 모두 수락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용 "공급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 기타 합의, 계약, 발주와 그 별첨 또는 변경조항(통칭하여 "계약")에는 모두 적용된다. 이때 "구매"라는 단어는 예컨대, 렌탈과 리스, 라이선스 등을 포함해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계열사"란 "쌍방" 중 한 곳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개인 한 곳 또는 복수를 통해 "지배"하거나 "쌍방" 중 한 곳에게 그렇게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기존 또는 미래에 생길 법인을 말한다. "지배"란 한 법인이 자본금의 지분 보유나 계약 등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의 경영과 정책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단 자본금 또는 의결권을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공급자"가 "계약"에 서명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개시하면 "일반 조건"을 포함해 해당 "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자"는 "계약"이 해당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수락된 것임을 보증해야 한다.

"공급자"가 "계약"을 수락하는 것은 수락일 현재 유효한 "일반 조건"을 검토하였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는 의미이다. 본 "일반 조건"(개정 조건 포함)은 <https://purchasing.michelin.com/en/document-area/conditionofpurchase/>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포함," "예컨대," "예를 들어," "등"과 같은 표현은 그 제시된 대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공급자"가 견적서나 제안서, 주문의 수락서 또는 확인서에서 언급하거나 인용하는 조건은 "구매자"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구속력이 없다. "계약"에 속한 문서들의 조항들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더 구체적인 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에 우선하며 본 "일반 조건"과 기타 "쌍방"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계약" 문서 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기타 "계약" 문서가 우선하며 본 "일반 조건"에 명시된 해당 상충 조항은 배제한다. "계약"(본 "일반 조건" 포함)의 제목은 참조를 쉽게 하기 위한 용도일 뿐 "계약" 조항의 해석에는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다.

본 "일반 조건"을 포함해 "계약"의 어떤 조항이 "구매자" 및 "공급자"의 본국 또는 본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조지, 인도지 또는 예상 이용지에서 적용 중인 법이나 규정, 기타 의무 요건("관련법")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집행이 불가하거나, 금지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된 대로 집행 가능하다고 간주한다. 단 해당 조항이 중대한 사항이라면, 즉 그 조항이 없었다면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쌍방"은 즉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원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집행 가능한 대체 조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2. 인도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인도는 "계약"에 명시된 명시적 지시사항 및/또는 선적 조건에 따른다. "계약"에 선적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도는 ICC Incoterms 2020 중 CIP(운임보험료 부담) 또는 동등한 현지 국내 판매 조건으로 하고, 인도 장소는 "구매자"의 발주서에 명시된 곳으로 한다. "공급자"는 세관 코드, "제품" 이중 용도 품목 분류(해당 시), 원산지 증명과 관련 증명서, 필수 안전 마크와 서류, 해당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사용/운영/정비/관리 설명서 등 목적지 또는 목적항에서 세관 절차와 통관, 관세 특전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 일체를 "구매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급자"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문서 전체를 영어, 그리고 해당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고 사용될 현지 언어로 제공한다. "공급자"는 또한 "구매자"의 발주 번호, 인도 명세, 상응하는 포장 단위 또는 벌크 상품의 수, 중량과 제원이 수록된 인도 전표 2매도 제공해야 한다. 인도 전표 하나는 포장 바깥 면에 주소 라벨 형태로 부착하고 다른 하나는 "제품"의 실제 발송일을 표시하여 "구매자"의 입고 담당부서로 보낸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구매자" 및/또는 그 "계열사"의 사업 운영을 위해 적격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적시에 인도해야 한다. "공급자"는 지연 위험이 있을 때 예외 없이 그 대응 조치와 함께 즉시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급자"는 인도 지연 또는 부족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항공 운송을 포함해 가능한 조치를 모두 자비로 강구한다. "구매자"는 적격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본인 단독 재량과 선택으로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15.1조에 따른 "공급자"의 추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지연, 조기, 부분 또는 과다 인도를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할 권리가 있다. "공급자"는 운임, 보관료, 손해, 기타 각종 비용 등 해당 인도의 결과로 발생하거나 "공급자"가 명시적인 인도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별개로 "공급자"는 "구매자"가 선택하고 요청하면 지연 또는 불완전 인도 또는 결함 있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인도에 대해 서비스 크레딧을, 가격(세금 전액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는 "계약"이나 법에서 부여하는 추가 시정조치와는 별개로 한다. 이 계산은 지연 1일당 "계약" 금액의 0.4%(영점 사 퍼센트)와 같으며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상기 서비스 크레딧은 결함 있는 "제품"이 인도되었을 때에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서비스 크레딧은 "구매자"가 하자를 통보한 날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결함 있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적격한 대체물로 대체할 때까지 지속된다.

3. 수락

"구매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검토 및/또는 검사하여 "구매자"의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는 "관련법" 또는 "구매자"의 요건(기능적 또는 기술적 사양 포함)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해당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결함 있는" 상태로 만드는 불일치 또는 미달을 "결함"이라고 함)는 어느 것이든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할 수

있다. 인도를 확인한다고 하여 "결함 있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수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매자"가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완료 및/또는 수락을 확인하는 문서 내지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하더라도 "구매자"는 "공급자"의 보증이나 보장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결함 있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수락한 것은 취소 불가하지 않다.

4. 가격

"계약"에 명시된 가격은 고정적이며 검토 대상이 아니다. 가격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나 기타 현지에서 부과하는 동급의 판매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공급자"는 관련 세금이나 관세, 과금, 기타 요금(인도비용, 포장 요건, 보호/안전/취급 관련 기본 조건, 여비, 숙박비, 식대, 문서작성 등)을 비롯해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모두 부담한다. "쌍방"은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 축소를 위해 협조하고 납세 책임, 의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문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구매자"가 사전에 "공급자"에게 운송비와 인도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경우, "공급자"는 최선을 다하여 해당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구매자"는 "공급자"가 적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만을 보전해 준다. "구매자"는 운송비를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 확인된 거래상 적정 비용 수준에 맞추어 보전해 줄 금액을 감액할 권리가 있다.

5. 재산권

5.1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소유권 이전

"구매자"는 소유권 유보 조항을 모두 부인한다.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소유권은 유치권이나 청구권, 제한물권, 이자, 기타 권리(통칭하여 "**제한물권**")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1) 해당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대금 지급 시점, (2) 합의한 수락 절차에 따른 수락 시점(해당할 경우), (3) 해당 인도 조건에 따라 손실의 위험이 "공급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되는 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요청하면 "구매자"가 본인 재산과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게 하는 데 필요한 유치권 포기각서나 진술서, 기타 문서 일체를 제공한다.

5.2 "지적재산권"

"기존 지적재산"이란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은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고 "계약" 전에 또는 "계약"의 범위 밖에서 일방 및/또는 제3자 사용권 공여자가 창작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통칭한다.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구, 데이터베이스, 노하우, 설계, 사양, 발명, 공식, 소프트웨어, 정보, 데이터, 공정 또는 방법, 알고리즘, 활자체, 문서, 파일, 로고, 상표, 슬로건, 도메인명, 일러스트레이션, 음악, 영상, 그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적재산권**”이란 저작권이나 특허권, 상표, 영업비밀, 데이터 권리, 기타 “지적재산권”을 근거로 한 권리와 소유권 지분을 통칭한다.

“**작업결과물**”이란 재산권이 존재하거나 재산권을 획득 또는 주장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또는 “구매자”와 함께 개발, 발견, 발명, 저작 또는 처음 도입하는 산출물(형태 불문)을 통칭한다. 문서와 자료, 콘텐츠, 사양, 발명품, 개선사항, 개조품, 강화물, 파생물, 공정, 방법론, 공식, 설계, 도면, 정보,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소스 코드, 바이너리형 소프트웨어(파생물이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신규 출시 포함)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단 해당 “작업결과물”에서 “공급자” 또는 제3자의 기존 지적재산권은 제외한다.

5.2.1 기존 지적재산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각 일방의 “기존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 지분은 모두 각자 소유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하는 “기존 지적재산”이 있다면 오직 “구매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이용해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 종료(만료, 해지 불문) 시 “구매자”의 “기존 지적재산” 이용을 전면 중단한다.

5.2.2 작업결과물의 소유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작업결과물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 지분은 모두 창작 상태 그대로, 그 어떤 제한과 제한물권도 없이 “구매자”에게 독점 귀속되며 “구매자”는 본인 단독 재량으로 이를 원하는 곳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용할 수 있다. 작업 결과물에 들어 있거나 작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오직 “구매자”만이 본인 또는 그 “계열사”의 명의로 획득, 보유, 갱신할 수 있다. “계약”이 “지적재산권” 등록이 가능한 작업결과물의 창작을 위해 체결되는 경우, 해당 작업결과물은 “구매자”의 “직무발명”로 간주하며 이때 독립 계약자라는 “공급자”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직무발명”의 개념은 “공급자”가 작업결과물에 속하거나 그것에 대한 저자의 경제적 권리 일체를 창작 즉시 법에서 허용하는 저작권의 최대 보호 기간만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구매자”에게 배타적으로 추가 보상 없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권과 전부/부분/영구/임시 복제권, 작업결과물을 직접 및 간접 활용하기 위해 이용, 배포, 양도, 사용권 제공, 수정, 각색, 번역할 권리 등이 여기에 속하며 과정과 수단, 매체(양도일 당시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함함)를 불문한다. “공급자”는 그 외에 상기 권리와 소유권, 지분을 “구매자” 또는 그 지정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본인 단독 부담으로 강구하기로 한다. 특히 법률 등에 따라 “공급자”의 직원이나 그 외 다른 이해관계자가 어떤 작업결과물에 대해서든 “지적재산권”이나 그 외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을 소멸시키거나 양도 받는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작업결과물을 어떤 형태로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어떤 타인이나 법인에게도 복사하거나 복제, 판매, 전송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작업결과물의 일부를 타국에 수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협력하고 “구매자”를 지원한다. 이때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모든

작업결과물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무엇이든 강구한다. "지적재산권"의 이전 가격은 "계약"에 따른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돼 있다.

5.2.3 "공급자"의 "기존 지적재산" 이용 권리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공급자"의 "기존 지적재산"을 내장하고 있거나 그것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법에서 정한 최대 보호 기간에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운영 또는 관리할 목적으로 "공급자"의 "기존 지적재산권"에 접근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 양도불능, 전세계 사용권을 제공하며, 여기엔 제3자에게 재라이선스할 권리가 포함된다. 이때 그 비용은 해당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돼 있다. "공급자"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기대 사용 연한 도안 그 이용 및/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지적재산"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다면 무엇이든 제공하기로 한다. "구매자"는 "기존 지적재산"(업데이트 포함)이 들어 있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료를 본인이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설치하는 데 합당하게 필요한 대로 복사, 번역, 각색, 업데이트 및/또는 개작할 권리가 있다. 단 "구매자"는 (i) "관련법"에서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공급자"의 기본 소프트웨어를 분해, 해체 또는 역설계하거나 그 소스 코드를 찾아내지 아니하며 (ii) "공급자"의 "기존 지적재산"만을 따로 3자("구매자"의 "계열사" 제외)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아니한다.

5.3 3자 재산권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구매자"가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는 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그 어떤 제3자의 권리(소유권, "지적재산권", 기타 독점권을 불문함)도 삽입하지 않기로 한다. "공급자"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 또는 그 구성품이 제3자 재산권을 침해 또는 유용했거나 침해 또는 유용에 기여했다는 청구 또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 경비에 대해 "구매자"를 면책하고 방어한다. "공급자"는 또 침해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있다면 "계약"에 부합하고 침해하지 않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로 대체하거나 "구매자"가 해당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필요한 사용권을 확보해 제공한다.

5.4 도메인명

"공급자"는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의 명칭이나 브랜드, 등록/미등록 상표가 들어 있는 도메인명이나 하위 도메인명 또는 그것과 유사하여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을 구매하거나 창작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도메인명은 모두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가 배타적으로 타당성을 확인하고 소유한다.

5.5 "공급자"가 보관 중인 "구매자"의 재산

"구매자"가 "공급자"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거나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한 공구나 장비, 샘플, 문서, 자료, 기타 재산("구매자"의 재산")은 모두 "구매자"에게 독점 귀속된다. "공급자"는 사용하기 전에

"구매자"의 재산을 검사하여 하자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고와 안전 요건이 있다면 주목하고 숙지한다. "공급자"는 본인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구매자"의 재산을 빠짐 없이 정확히 파악해 기록하고 "구매자"가 요청하면 그 기록을 제시한다. "구매자"의 재산은 모두 라벨 등을 알맞게 붙여 표시하고 "공급자"가 보유하는 동안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거나 제한물건이 설정되지 않게 한다. 또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 시 "구매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하고, 이때 경고와 사용법, "관련법"을 모두 지켜야 하며,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매자"가 요청하면 합당한 마모와 손상을 제외하고 "공급자"가 처음에 받은 상태 그대로 반환한다. 반환 장소는 "구매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해당 "구매자"의 재산을 최초로 제공 받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곳으로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재산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동안, 손실이나 손해를 포함해 "구매자"의 재산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발생하는 경비가 있다면 모두 부담한다.

6. 품질

"공급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적용하여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관련법", 기능 및/또는 기술 사양, 기타 "구매자"가 정한 요건 등 품질 기준을 모두 충족하게 한다. "공급자"가 어떤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든 결함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당 결함 가능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개시한다. 특히 필요하다면 "결함 있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대체한다. "구매자"가 어떤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품질 불만이 있을 경우,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구매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해당 결함 가능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요청하면 전문 연구에 참여하고 협조하여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접근을 모두 허용한다. 단 "구매자"가 전문 연구를 실시하더라도 해당 결함에 대한 "공급자"의 배상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

7. 청구와 결제

이견이 없는 청구서는 "계약"에 명시된 결제 방법으로 결제한다. 해당 조항이 없다면 월 종료 후 구십(90)일, 즉 청구서 발행 월 마지막 날로부터 90번째 되는 날까지 결제한다. 단 "관련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결제 기간을 적용한다. 연체 시 "구매자"에게 이자 및/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이자 및/또는 수수료는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으로 한다.

"구매자"에 받은 복수 발주서에 따라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주 건별로 청구서를 따로 발행한다. 각 청구서에는 최소한 그 제목(청구서, 대변표 등을 말하며 영구적으로 표시할 것)과 "공급자"의 법인명과 주소, VAT 또는 기타 납세 번호, "구매자"의 법인명과 주소("구매자"의 주문서에 나와 있는 것), "구매자"의 발주 번호 또는 해당 요청을 한 "구매자"의 대표자, 청구서 번호와 청구 일자, 세전/세후 청구액, 통화,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세와 수량, 청구 사유, 인도지 주소, RIB/IBAN을 표시한다. 각 청구서는 해당 "제품" 및 /또는

"서비스"의 인도 당시 또는 직후에 "구매자"가 통보한 청구 주소로 발송한다. "구매자"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 인도일 후 십이(12) 개월이 지나 제출하는 청구서에 대해서는 결제를 거절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 "구매자"는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서로 이견이 있는 청구서에 대해서는 결제를 늦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요청을 받으면 PDF 또는 "구매자"가 승인하거나 통보한 기타 전자 수단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청구서 중 "구매자"가 수락하지 않은 것은 "구매자"가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할 수도 있다. "구매자"가 어떤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통보한다. "공급자"가 "구매자"의 주장에 동의하면 "공급자"는 즉시 상응하는 대변표를 발행한다. "공급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쌍방"은 "계약"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발동한다. 분쟁 해결 절차에서 "구매자"의 주장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확인되면 "공급자"는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 대변표를 발행하고/발행하거나 새 청구서를 발행하여 새 청구서에서 합의한 결제 조건에 따라 결제한다. 분쟁 해결 절차에서 "구매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구매자"는 기존 청구서를 결제하고 기존 청구서 결제 기한 이후 발생한 연체 이자까지 지급한다. 단 "공급자"는 분쟁 해결 기간에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하지 아니한다.

"구매자"는 "계약" 또는 여타 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급 받을 채무 전액에 대해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현재 또는 앞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상액이 있다면 그것에서 "구매자"가 받을 금액을 상계하고 보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허용한다.

8. 진술과 보증

8.1 일반 진술과 보증

"공급자"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보증한다.

- a) "공급자"는 설립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회사이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고 온전히 이행할 권리와 권한을 모두 갖추고 있다.
- b) "계약"은 "공급자", 그 "계열사" 및/또는 그 직원이 적용을 받고 있는 그 어떤 성격의 계약상, 금전적, 사업상 또는 법적 의무와도 충돌하거나 그것에 반하거나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아가 "계약"이 효력을 가지는 한, "공급자", 그 "계열사" 및/또는 직원은 "계약"을 침해하거나 "공급자"의 "계약" 이행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의무는 그 어느 것도 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
- c) "공급자"는 "관련법"을 항상 빠짐없이 준수한다.
 - o "공급자"는 위 사항과 별개로 "제품"과 그 포장에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허가, 제한에 관한 유럽의회/이사회 규정(EC) n°1907/2006("REACH")'과 '물질과 혼합물의 분류와 표시, 포장에 관한 유럽 규정 (EC) n°1272/2008("CLP")'의 요건을 모두

준수한다고 명확히 보증한다. "제품"과 그 포장에 들어 있는 물질은 모두 "구매자"가 밝힌 용도로 등록을 한다. "공급자"는 "제품"에 화학 물질이 들어 있다면 모두 REACH나 CLP에 따라 관련 정보, 특히 관련 안전보건자료와 기타 유사한 주요 문서에 수록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공급자"는 REACH에서 정한 제한이나 REACH의 시행 과정에서 관련 당국이 시행하는 제한, 특히 "제품"과 그 포장에 들어 있는 어떤 물질의 사용이나 판매, 처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용 제한이나 허가 제한이 있다면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제때에 알린다. "제품"이 REACH에 따라 EU 시장에 출시된 품목일 때, "제품"과 그 포장에 어떠한 형태든 고위험성 물질(SVHC)이 발견되고 이 물질이 REACH에서 규정하는 SVHC의 후보 물질로 판명되어, 제품 개별 성분의 중량 기준 0.1%를 초과하게 되면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적법하게 작성한 SVHC인증서와 본 관련법 및 그 외 상응하는 관련법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관련법에 의거 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후보물질은 정기적으로 변경되므로 "공급자"는 수시로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 d) "공급자"는 미쉐린 구매 원칙을 준수한다. 이 미쉐린 구매 원칙은 "계약"에 매우 중요하며 "구매자"와 "공급자"가 지속 가능한 구매를 위해 지켜야 하는 윤리적이고 법적인 약속들을 강조하고 있다. 미쉐린 구매 원칙은 <https://purchasing.michelin.com/en/purchasing-principl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 "공급자"는 해당한다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이나 C-TPAT, 그 외 상응하는 국가 인증을 획득한다.
- f) "공급자"는 "계약"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허가와 사용권, 동의를 모두 획득하였으며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 이를 유지한다.
- g) "공급자"는 맡은 업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자격과 경력, 교육,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고 "계약"의 요건에 정통한 인력을 배정한다.
- h)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모두 받았고 "계약"의 맥락 안에서 필요한 질문을 모두 하였으며 만족스럽게 충분히 답변을 받았다.
- i) 공급업체는 "구매자"가 요구사항을 확정할 때 "구매자"를 지원하고 조언하며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나 비용 절감이 가능한 조치나 기술적 솔루션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안한다. 또한 "공급자"는 "계약" 이행 중에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경제성이나 가격, 품질, 성능, 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건을 인지하거나 그런 뉴스 또는 "관련법"이 있다면 "구매자"에게 알린다.
- j) "공급자"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일어나는 "구매자"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과 보건, 위생 수칙을 준수한다. 해당 규칙과 요건은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 k) "공급자"는 그 방식을 불문하고 "제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기 또는 기타 실제이거나 의심스런 부정/불법 행위가 연루된 유사 행위를 인지하면 그 인지한 날부터 일십오(15)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때 "공급자"나 그 직원, 소유자, 대리인, 하도급업자, 기타 제3자 등 연루자를 불문한다. 이 의무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공급 완료한 후에도 삼(3)년 동안 유효하다.

8.2 "제품"과 "서비스"의 보증

"공급자"는 모든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i) 기능적, 기술적 사양이나 도면, 샘플, 기타 "구매자"의 요건에 부합하고, (ii) 판매 가능한 품질을 지녔고 재료와 완성도가 우수하며 결함이나 오염이 없고 정상적인 시험 외에는 쓴 적이 없는 신제품이며 일반적인 용도와 해당 "제품"/"서비스"가 판매되는 용도에 부합하며, (iii) 설정된 제한물권이 없고, (iv) 제조 중에, 그리고 손상이나 파괴, 손실의 위험이 "공급자"에게 있을 때에는 항상 "공급자"에 의해 적절하게 보호된다고 보증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보유 중인 여타의 규제수단과 별개로, 결함이 있거나 지정 수량에 미달하거나 기타 "계약"에 반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 또는 그 구성품에 대하여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즉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이를 시정, 교체하거나 전액 환불 조치한다. "구매자"는 본인 선택으로 구매 가격을 조정 받아 "결함 있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인수할 수 있다. 거절 당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보관, 인도, 검수, 반출, 반환, 교체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거절 당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는 "구매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소지하겠다고 하지 않은 한,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그에 따른 위험은 "공급자"가 진다.

8.1조와 8.2조에 명시된 진술과 보증은 "구매자"와 그 승계인, 양수인을 수익자로 한 것이다. 진술과 보증은 모두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하고 "관련법"에서 허용한 최대 기간(단 이(2)년 이상이어야 함)에 8.2조의 "제품"/"서비스" "보증"에 대해 유효하다. "결함 있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면 보증 기간은 갱신된다. 본 8.2조는 "관련법"에 따른 법정 보증이나 보장을 보완하는 것이다.

9. 기밀유지

"기밀정보"란 일방 또는 그 "계열사"("공개인")가 상대방("수령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정보로서 (i) 공개하는 매체와 수단을 불문하고 기술적, 과학적, 경제적, 금전적, 상업적, 법적 정보와 데이터, 특히 영업비밀과 아이디어, 계획, 연구, 실험 프로토콜, 보고서, 도면, 그래픽, 사양, 노하우, 시"제품", 원재료, 공식, 공정, 합성 방법, 제형 방법, 분석 방법, 제조 공정, 매개변수, 물질, 분자, 비상용 샘플, 제품의 기능,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 등 모든 종류의 정보와 데이터, (ii) "수령인"이 "쌍방" 간 회의 중에 및/또는 "공개인"의 시설 방문 중에 발견, 관찰하거나

알게 된 정보, (iii) "계약" 또는 그 목적에 관한 정보 (iv) "공개인"의 "기밀정보"에서 파생됐거나 유래했거나 그것을 내장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말한다. 단 명확히 "구매자"를 위해서 개발하거나 창작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는 창작 즉시 "구매자"의 "기밀정보"가 된다.

"기밀정보"는 항상 "공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며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공개자가 원할 때 회수할 수 있다. "수령인"은 "기밀정보"를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이용하기로 한다. "수령인"은 "계약"이나 "쌍방"이 별도로 체결한 기밀유지 또는 비공개 "계약"에 들어 있는 추가 또는 여타 규정과 별개로 "공개인"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그 어떤 "기밀정보"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그 직원이나 대리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수령인"은 (i) "계약"의 이행에 직접 관여하는 그 직원이나 "계열사"의 직원, 하도급업자, 대행인에 한해 "계약" 관련 임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기밀정보"의 열람과 소지, 인지, 이용하게 하고 (ii)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자에게는 최소한 여기 명시된 것만큼 엄격한 기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iii) "기밀정보"를 받은 자가 "기밀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경우 그 공개 또는 위반을 "수령인" 본인의 것으로 간주하여 그 무단 공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위 기밀유지 의무는 "계약"에서 매우 중요하며 "계약"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오(5)년 간 존속한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면 "기밀정보"는 모두 "공개인"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한다.

본 9조의 의무는 "수령인"이 서면 증거를 통해 (i) "수령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 없이 공개 시점에 대중에게 알려져 있었거나 공개 후에 대중에게 알려진 것이라고 입증하는 "기밀정보" (ii) "수령인"이 "공개인"의 "기밀정보"를 수령하기 전에 "수령인"이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었고 "수령인"이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고 입증하는 "기밀정보" (iii) 기밀유지 의무를 어는 것도 위반하지 않은 제3자가 "수령인"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입증하는 "기밀정보" (iv) "수령인"이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 개발했으며 "계약"에 따른 작업결과물이 아니라고 입증하는 "기밀정보" (v) 법이나 법원 명령, 기타 적법한 정부 조치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증하는 "기밀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v)의 경우 해당 법이나 명령에서 정한 공개 범위에 한하며 "수령인"은 "공개인"에게 즉시 알리고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기밀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밀 정보가 상기 예외에 속하는 일반 정보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밀정보를 상기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기밀정보의 조합 내 개별 정보가 이러한 예외사항에 각각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밀정보의 조합이 상기 예외 사항에 속한다고 간주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별개로, "수령인"은 법에서 요구하거나 법무, 세무 또는 금융 담당 변호사가 "수령인"을 위한 임무의 완수를 위해 요청하면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변호사도 법상 또는 계약상 동일한 기밀유지 의무를 지는 때에 한한다.

10. 홍보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구매자" 및/또는 그 "계열사"의 명칭이나 상표,

"서비스" 마크, 기타 고유 표식을 그 형태, 목적을 불문하고 이용하지 아니한다. 명확히 하자면,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공급자"의 회사 문서, 홈페이지 혹은 디지털과 종이를 불문하고 어떤 형태로든 "공급자"가 "구매자"의 공급자라는 언급, 문구 혹은 통지를 제3자에게 해서는 아니되며,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 목적을 불문하고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어디든 증권거래소나 정부 기관, "관련법"에서 "공급자"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발표나 고시를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해당 발표의 문구와 배포 대상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할 때까지 발표를 하지 아니한다..

11. 면책과 배상책임

"공급자"는 "구매자"가 (i)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예상하고 예측한 대로 이용하거나 (ii) "공급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나 진술, 보증을 위반하거나 (iii) "공급자" 및/또는 그 인력, "계열사", 하도급업자가 과실이나 비행을 범하여 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입거나 당하는 손실과 지출(합당한 변호사 수임료와 법무 비용 포함), 배상책임, 배상청구(제3자 청구 포함), 손해에 대해 "구매자"와 그 "계열사", 도급업자, 이사, 대행사, 직원, 승계인, 양수인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피해가 없게 한다. "구매자"가 법무 비용을 지출하여 "공급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게 할 경우, "구매자"는 합당한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비롯한 해당 비용 일체를 "공급자"에게서 회수할 수 있다.

본 11조에 명시된 "구매자"의 구제조치는 누적이며 여기 명시된 구제조치는 법 또는 형평법에 따른 여타의 구제조치를 배척하지 아니한다.

12. 정보 보안

"공급자"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 시스템 등의 보안을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데이터 보안 침해나 기타 무단 접속, 악성 코드의 전송, 사업 차질 등 보안 사고 예방에 합당하게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모두 강구한다.

13. 보험

"공급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구매자"가 인정하는 국제적 명성을 지닌 보험사에 다음과 같이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유지한다.

- a) "계약" 기간에, 그리고 그 이후 오(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효하고 모든 국가에서 배상청구를 보장하는 제조물 책임 보험 프로그램(전문가 배상/오류와 누락 보장이 포함된 것). 이때 "구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한다.
- b) "계약" 기간에, 그리고 그 이후 이(2)년 동안 화재배상책임, 계약배상책임, 개인상해보장, 환경/오염(별도 보험으로 보장해도 무방), 정보기술/인터넷/사이버 범죄(별도 보험으로 보장해도 무방)를 포괄하는 종합배상책임보험.
- c) "계약" 기간에, 그리고 "공급자"가 "구매자"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간에 "공급자"나

그 대행사, 직원, "계열사"가 소지하고 있거나 사실상 관리,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구매자"의 재산에 대해 손실이나 파괴, 손해를 보장하는 "전위험" 재산보험.

"공급자"는 보험에서 자기부담비율이나 본인부담금을 요구한다면 이를 전액 부담한다. 필요한 보험은 모두 기초 보험으로 하며 "구매자"가 가입하거나 제공하는 보험에서 기여를 받지 아니한다. "공급자"의 보험은 "구매자"를 대상으로 대위권 포기 약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술한 "공급자"의 보장 요건은 "구매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축소할 수 없다. 보험이 갱신되거나 "구매자"가 요청하면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 증거를 제시한다.

14. 불가항력

"불가항력" 사건이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며 "쌍방"의 통제 범위와 의지를 벗어난 것으로서 일방의 계약상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을 통칭한다. 전술한 정의가 충족되는 범위에서 (i) 내전 또는 외적 상대 전쟁 (ii) 폭동 (iii) 파업 (iv) 조업 중단 (v) 화재, (vi) 심각한 수해 (vii) 정부의 조치 (viii) 규정이나 법률의 제정 또는 시행, 법원 명령, 기타 예기치 못한 제한 (ix) 무역 전쟁 (x) 폭발 (xi) 자연재해, (xii) 전염병 또는 유행병도 불가항력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단 해당 예시들은 상기 정의 하에서 불가항력 사건이 될 만한 것을 모두 다 열거한 것은 아니다.

불가항력 사건으로 일방("피해 일방")이 "계약"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어는 것이든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해 일방"은 그 불가항력 사건이 "피해 일방"에게 피할 수 없고 "피해 일방"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으며,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이 상거래상 합리적인 대책으로는 완화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그 불이행에 대해 배상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피해 일방"은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 또는 시작한 후 상거래상 합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피해 일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과 그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그리고 가능하다면 계약상 의무의 이행 중단 예상 기간을 서면(수신 확인 이메일이나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알린다. 불가항력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재난 복구와 사업 연속성 관리 계획을 시행할 "공급자"의 의무는 면제되거나 소멸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 사건이 그 통보일 후 삼십(30)일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그 기간에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구매자"는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권리가 있다. 단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 (일부 해지할 경우 "쌍방"은 "계약"의 존속 조건을 정한다.) 해지는 ("구매자"의 단독 재량과 선택에 따라) 즉시 발효되거나 "가역성 서비스" 및/또는 통보 기간을 조건부로 하며 해지에 따른 배상책임은 없다.

15. 해지

15.1 이유 있는 해지. 일방("비불이행 일방")은 상대방("불이행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비불이행 일방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후 삼십(30)일이 지나도록 그 위반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이나 "계약"에서 부여한 여타의 권리, 구제수단과 별개로, 또한 (오직 "구매자"의 단독 재량과 선택에 따라) "가역성 서비스"의 이행을 조건부로, 불이행 일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구매자"는 또 "공급자"가 "구매자"의 이미지나 브랜드, 영업권, 평판에 해가 되는 행위에 가담한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2 "지배 구조 변경"에 따른 해지. "공급자"는 "지배 구조 변경" 시 조속히, 적어도 그 "지배 구조 변경"이 발효된 후 삼십(30)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통보한다. 본 해지 규정에서 "지배 구조 변경"이란 제3자가 합병이나 인수, 기타 공동 "지배" 수단을 통해 "공급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공급자"가 "지배 구조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구매자"는 어떠한 배상책임이나 금전적 의무 없이 15.5조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i) 그 "지배 구조 변경"이 발효되는 날과 (ii) "구매자"가 그 "지배 구조 변경"을 인지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삼십(3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3 지급불능으로 인한 해지. 일방은 상대방이 언제든지 (i)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파산이나 지급불능, 기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을 선언하거나 (ii)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그 자산의 사실상 전부를 매각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어떠한 배상책임이나 금전적 의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4 편의상 해지. "구매자"는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전술한 바와 별개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공급자"에게 삼십(30)일 전까지 서면 통보하고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15.5 가역성 서비스. "공급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됐을 때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통보 전에 수락한 주문이나 재공품이 있다면 구매자의 단독 재량과 선택에 따라 이를 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문과 재공품,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인도는 "계약" 조건에 따른다.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요청하면 "가역성 서비스"의 일환으로 작업결과물, 그리고 "구매자"에게 속한 자원 또는 접속권의 이전(후속 "서비스" 사업자나 "구매자"에 대한 이전 포함)에 충실히 협조하기로 한다.

16. "관련법"과 분쟁 해결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매매와 "계약" 하에서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해석이나 유효성, 이행, 불이행, 각종 문제에 관한 분쟁은 주문하는 "구매자"의 본사가 속한 지역의 "관련법"에 따라 해석한다. 그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국제사법 원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쌍방" 합의에 따라 상품의 국가간 매매에 관한 UN 협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 하에서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해석이나 유효성, 이행, 불이행, 각종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의 "분쟁 해결"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동 규정이 없을 때, 일방이 상대방에게 분쟁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육십(6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모두 "구매자"의 본사가 속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쌍방"은 동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동의한다.

17. 독립 도급업자

"공급자"는 모든 면에서 독립 도급업자이다. 본 "계약"으로 인해 "구매자"와 "공급자" 간에 제휴나 합작투자, 주종 관계,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쌍방" 누구도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상대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을 대신해 의무를 발생시킬 권한이 없다.

18. 양도와 하도급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에 따른 의무나 권리를 그 어느 것도 양도하거나 하도급 또는 이전하지 아니한다. "구매자"의 동의 없는 양도나 하도급, 이전은 무효이다. "공급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매자"를 위해 "계약"을 빠짐 없이 완벽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동의하면 어떤 하도급업자에 대해서든 "계약"의 조건을 수용하고 준수하게 한다. 또한 "구매자"는 본인 선택으로 어떤 하도급업자에 대해서든 ("공급자"에 더하여) 직접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매자"는 "공급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급자"의 도급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구매자"가 그 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구매자"의 단독 재량 및 선택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불할 가격에서 제하거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보전해 준다.

19. 검사권과 감사권

"공급자"는 "구매자"가 요청하고 합당하게 통보하면 "구매자"(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3자 감사인)에게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장부, 기록(그 형식을 불문하며 이하 통칭하여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공급자"의 시설에 대한 접근권도 제공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품질 공정과 절차를 포함해 "구매자"가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검사 및/또는 감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급자"는 위와 같이 "구매자" 또는 그 지정 대리인에게 접근권을 제공할 때 정규 업무 시간에 제공하고, "문서"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 또는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한다. 어느 감사에서든 "구매자"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은 필요한 "문서"를 감사, 조사, 복사하고 발췌할 수 있다. "공급자"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문서"와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이행과 관련된 "문서"를 최소한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은 보존하여야 하고, 더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문서 보존 기간 또는 "구매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본 19조에 따른 검사권과 감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 또는 요건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0. 사업 연속성

"공급자"는 불가항력을 비롯해 "공급자"의 정규 사업 운영이나 역량을 저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매자"에게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사업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요청하면 "사업 연속성 계획" 1부를 제출하고/하거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험 평가 및/또는 생산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구매자"에게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권고사항이 있다면 함께 제출한다. "공급자"는 요청을 받으면 "공급자" 보험사에서 보안 또는 재난 예방 대책에 관해 제공한 결론이나 권고사항, 보고서도 제출한다.

21. 완전 "계약"과 변경

"계약"은 "계약"의 대상과 관련하여 "쌍방"이 이전에 한 "계약"과 양해, 확인, 진술, 약속, 통신에 우선하며 이후에 "공급자"의 조건을 비롯해 "쌍방"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후속 문서는 배척한다.

22. 불포기

일방이 "계약"에 따른 권리나 청구를 집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더라도 그것을 해당 청구 또는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유사한 청구의 포기 또는 소멸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그 일방의 "계약"상 권리가 침해를 받는 것도 아니다. 일방이 "계약"에 따른 본인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포기는 포기할 때 언급한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23. 통보

"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하는 통보는 모두 등기 우편 또는 속달 "서비스"(배달증명서 첨부)로 하되 "구매자" 또는 "공급자"의 대표자를 수취인으로 하고 "계약"에 명시된 주소 또는 해당 일방의 적법한 대표자가 별도로 통보하는 주소를 이용한다.

24. 전자 서명

"쌍방"이 "계약"을 전자 서명으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면 아래 명시된 "전자 전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는 전자 서명은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서명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전자 전송"이란 종이의 실제 전송을 직접 동반하지 않고, 그 수신인이 보존하고 불러오고 검토할 수 있으며 또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 종이 형태로 직접 복제할 수 있는 기록이 만들어지는 통신 형태를 통칭한다. 단 전송은 안전해야 하고, 모든 작동은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추적,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은 수신인과 발신인이 보존하고 불러올 수 있고 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5. 효력의 유지

"계약"의 규정 중에서 그 속성상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존속해야 하는 것은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온전히 효력을 유지한다.